

2023년도 인천지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인천지역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인천지역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기업으로 성장 유도

모집 규모 : 10개사 내외* (3억원)

* 수출 규모별 신청기업 수와 정부 보조금 신청현황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사업 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3월 (8개월)

*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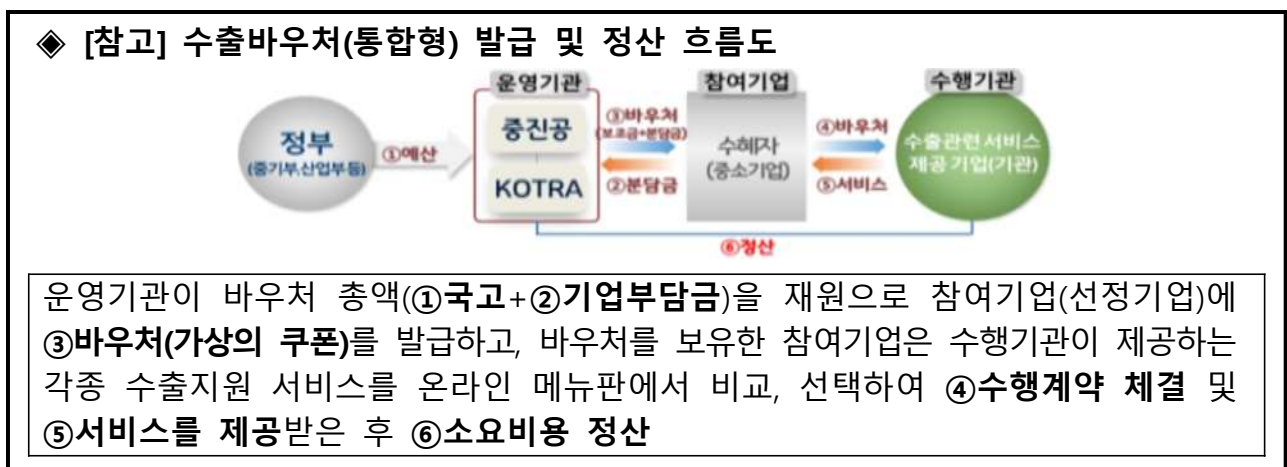
- ◆ 서비스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단, 전시회/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홍보·광고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 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 단, 서비스 완료 확인을 받고, 운영기관에서 서류 미비 등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정산 보완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산 불가
 -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내용

○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 지원 요건

○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22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불 미만인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3.8.1. 기준)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1) 단,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및 감점
 - '22년 참여기업 중 협약 기간이 '23. 8.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가능하나, 협약 종료(23. 4. 30.) 기준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2)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과는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건으로 중복 정산 불가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분	지원대상	한도(백만원)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30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 ~ 100만불 미만	40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 시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 (수출실적 인정기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수출실적은 참여기업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 운영기관에서 조회
-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서비스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실적은 '22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KTnet 발급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 (보조율 차등)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단, '22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1년 재무제표 적용

- (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80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필수 제출

□ 진행 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 체결	바우처 활용	사업 운영
기업 모집 (인천청 누리집)	등기우편 접수	요건검토, 현장평가 및 심의·의결	사업 안내 및 협약	기업별 바우처 발급	마케팅 지원 및 정산
'23. 5. 22.(월)	'23. 5. 22.(월) ~'23. 6. 2.(금)	~'23. 7월 중	~'23. 7월 말	'23. 8월 ~	'23. 8월 ~'24. 3월
인천중기청	인천중기청	인천중기청, 중진공	인천중기청	중진공	중진공

* 세부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제출처) ☐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벤처 기업청 1층 수출지원센터 수출마우처사업 담당자 앞

□ 신청 기간 : '23. 5. 22.(월) ~ '23. 6. 2.(금)

- (접수 마감) 등기우편 접수 시 신청 마감일 소인 날인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방문·택배·퀵 서비스 등을 통해서는 미접수함

□ 신청 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필수	①	참가신청서	기업 기본정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날인 후 원본 제출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⑥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⑧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선택 (희망시)	⑨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⑩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⑪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⑫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0~'22년)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위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⑬	가점(각 2점, 최대 5점) 증빙	
		1)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21년 이후 지정 유효기간 내의 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두드림기업 (21년 이후 지정 유효기간 내의 기업) 3) 인천품질우수제품기업 4) 인천유망중소기업 5) 인천 비전기업 6) 인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7) 지역특화산업 해당 증빙서류	1)~6) 해당 시 지정서, 인증서, 선정 공문 등 증빙서류 제출 7) 참가신청서 상에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산업'에 체크한 기업(가점 해당 시)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개인기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혹은 계약서 등 해당 산업이 표기되어있는 서류 * 서류상으로 확인이 불가할 시, 가점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 ~ ③) 참가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 서식1~3 작성 후 원본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 (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에 한함, 원본 제출
- (⑥) '20~'22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 국세청 홈택스(국세완납증명), 정부24(지방세납세증명)에서 발급 가능
- (⑧)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⑨, ⑩)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확인본 등), 간접수출실적 증명서(KTNET 발급본) : 해당 시 제출
- (⑪, ⑫)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0~22년) : 해당 시 제출
- (⑬) 가점 증빙
 - (⑬-7)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개인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혹은 수출계약서 등 해당 산업이 표기되어있는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그 외 : 해당 인증서, 지정서, 선정 공문 등 확인 서류 제출

□ 평가 절차

- (요건 검토)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기업을 선정 (인천중기청, 중진공)
- (현장 평가)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 및 수출성장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인천중기청)

4.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5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 등 일부분야는 단가제한이 있을 수 있음

5. 가점사항

가점 항목

구분	가점 항목	점수
1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21년 이후 지정, '23. 8. 1. 기준 유효기간 내의 기업)	2
2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두드림기업('21년 이후 지정, '23. 8. 1. 기준 유효기간 내의 기업)	
3	인천품질우수제품기업	
4	인천유망중소기업	
5	인천 비전기업	
6	인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7	지역 특화 산업(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기업	

* 업체별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 가점 항목은 신청서류 접수 시 필수 제출, 제출 누락 시 가점 대상에서 제외

지역 특화 산업(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관련 세부 산업군

산업	세부 산업군
반도체산업	첨단항공 운송기기(차세대 우주항공), 항공부품MRO(항공기및 우주비행체 부품제조, 엔진제조, 소모품 등) 등
바이오산업	바이오 신약, 바이오 장기,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칩 등
미래차산업	전기차량, 수소차량, 자율주행차량 관련 부품 제조업 등
로봇산업	서비스로봇(의료지원용, 가정용 로봇 포함), 로봇응용산업, 산업용로봇, 지능형 로봇, 센서 및 제어부품 등

* 상기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의 가점 구분에 해당 체크 필수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수출계약서 등 해당 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 서류상으로 확인이 불가할 시, 가점 대상에서 제외

6.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 ex)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선정평가 과정에서 중기부 2차 바우처사업 및 타 기관(산업부 등) 통합형 바우처사업 모집에 최종선정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 2021년도 이후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바우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취함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초과 ~ 30%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15%이하	■ 제재 없음

- 2023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7. 문 의 처

소 속	전 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6, 1132, 1135